



이 글은 지난 5월2일 산업자원부에 제출한 건의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편집자 주-

## 비축관련 석유사업법령 개정에 대한 건의문

- 대한석유협회 -

1. 현행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는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 물량을 수출로 인정하여 내수판매량 산정시 제외하고 있으나, 금번 석유사업법령 입법예고시 이를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외국국적의 선박 또는 항공기」로 변경하여, 내국적외항선(기)에 대한 공급물량을 내수판매량에 포함시키려는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기에 현행 규정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건의드립니다.

(1) 관세법에 의하면 ‘외국무역선(기)’이라 함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운항하는 선박(항공기)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관세환급특례법 시행규칙도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왕래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선용품 또는 기용품으로 사용되는 물품의 공급’을 환급대상 수출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27조 1항에서도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선박(항공기)에 대하여 수출로 규정하고 있는 바, 석유사업법 시행규칙에서 내국적외항선(기)에

대한 공급물량을 내수판매량으로 규정하는 것은 관세법 등 기타 법률과 상충되는 것이며, 석유사업법 내에서도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동일한 대상에 대해 상이하게 규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2) 외항선(기)에 대한 공급물량은 외항선박(기)이 국내 항만(공항)시설(PORT)에서 주유하지 않으면 외국에서 주유하게 된다는 의미에서 수출로 인정되고 있으며, 관세와 석유수입부과금의 환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국적외항선(기)에 대한 공급물량은 수급통계상 내수로 파악되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 수출임에도 불구하고, 만일 개정(안) 대로라면 석유정제업자의 저장시설(석유내수판매량의 60일분)기준도 강화될 뿐 아니라, 관세와 부과금 환급체계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3) 외항선(기)에 대한 공급물량을 선박(항공기)의 국적에 따라 수출과 내수로 구분하는 것은 대부분의 선박이 편의에 따라 국적을 취득하고 있

는 상황 및 외국적선(기)과 동일한 형태의 운영을 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무의미한 것이며, 나아가 비축유를 방출할 만한 위기시라면 선박과 항공기의 운항도 제한될 것인 바, 국내벙커링 물량을 위기시의 비축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은 비축사업의 기본취지와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4) 비축의무량 산정기준이 되는 내수판매량에 내국적외항선(기)에 대한 공급물량을 포함하는 것은 정제업자의 실질적 비축의무일수를 2일 이상 증가시키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지니는 것으로서, 최근의 국내 경제현황 및 정유사의 경영실적을 고려할 때 심히 부담되는 일이며, 이와는 별도로 정제업자와 수입업자를 차별하는 결과가 되어 국내산업의 경쟁력 강화 시책에도 맞지 않습니다. 이는 우회적으로 수입업자를 보호하고 정제업자에게만 불이익을 주는 부당한 조치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5) 또한 국내벙커링물량의 내수 포함 및 비축의무 부과에 따른 추가 비용은 결과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국내 정유사의 경쟁력 저하는 물론 내국적외항선(기)으로 하여금 외국 항만(공항)에서 주유하도록 유도하는 결과를 낳아 국내 항민(항공)산업의 전반적인 침체를 초래하고, 정부의 통과선박(항공기) 유치를 통한 항만(공항)산업 활성화 시책 등과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2. 최근 정부가 IEA 가입을 결정함에 따라 국제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한 민간비축의무자의 비축부담이 매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약 45일분의 비축유를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약 25일분 만을 비축하고, 나머지는 민간에게 비축의무를 전가하

고 있는 형편입니다.

(1) 우리와 비슷한 일본의 경우 '90년부터 민간업자의 비축부담을 점차 완화하고 점진적으로 정부비축물량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76년부터 민간비축의무에 대한 자금지원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지속적인 민간업자의 비축의무 증가는 바람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2) 특히 국내의 경우 석유비축의무량을 운영재고량과 부과금면제비축량으로 구별하여 운영하고 있는 바, 운영재고량은 석유비축의무자가 정상적인 영업을 위하여 통상 보유한다고 인정되는 양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민간부문의 석유비축의무량의 불가피한 증가는 이러한 운영재고량의 정의에 부합되도록 부과금면제비축량으로 할당되어야 함이 타당하며, 석유비축의무자의 재고부담을 경감시키는 차원에서 자금지원 등이 반드시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3) 또한 정부부문의 비축계획만이 아닌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을 함께 고려한 범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중·장기적인 비축계획이 마련되어 계획적이고 체계적이며 예측 가능한 비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향후 정부의 종합적인 비축계획의 수립 및 공표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끝으로 석유사업법령 개정과 관련하여, 현행대로 내국적외항선(기) 공급물량을 내수판매량에서 반드시 제외함으로써 민간비축의무를 완화하고, 향후 정부의 비축부분을 확대하여 나감과 동시에 민간비축의 추가적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부과금면제비축량으로 할당해 주실 것을 거듭 건의드립니다. ◈